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1.]

[중전 제2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 9. 1.]

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

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1.]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6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 9. 1.]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항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2017. 5. 11.>

1.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나. 제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2조에서 이동 2016. 9. 1.]

제5조(응시원서)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 29.>

[전문개정 2012. 12. 31.]

[제목개정 2014. 1. 29.]

제6조(변리사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1. 사진 1장

2. 삭제 <2016. 9. 1.>

② 변리사회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리사 자격을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자격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

③ 영 제10조제2항의 변리사 등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변리

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29., 2016. 9. 1.>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7조 삭제 <2016. 9. 1.>

제8조 삭제 <2011. 6. 29.>

제9조 삭제 <2011. 6. 29.>

제9조의2(등록취소의 신청) 법 제5조의3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변리사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서 제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11조의2(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등) ① 법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 설립인가 신청 또는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29.>

② 영 제14조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29.>

③ 영 제16조의2제3항의 법인 인가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 29.>

[전문개정 2012. 12. 31.]

제11조의3(정관 변경인가 신청)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 및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12. 12. 31.]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라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31.]

[제목개정 2014. 1. 29.]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9.]

제12조(위원회 출석 통지)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출석기일 7일 전까지 별

지 제13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9.>

[전문개정 2012. 12. 31.]

[제목개정 2014. 1. 29.]

제13조(징계의결의 통지) 영 제21조에 따른 징계의결의 통지는 별지 제 14호서식의 징계의결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개업 등의 신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리사의 개업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무소 설치 등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다음 사항을 정한 규약을 첨부하여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제2항의 규약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

<신 설>

<신 설>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 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법인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합동사무소를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고서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변리사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고서 제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의4(소속변리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 -----
----- 따라 소속변리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5(해산신고) 법 제6조의9 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변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자격번호 제 호

변리사 자격증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사 진
3.5×4.5cm

위 사람은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허 청 장

직인

Certification No. :

CERTIFICATE OF PATENT ATTORNEY

Name :

Date of birth :

사 진
3.5×4.5cm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qualified as a patent attorn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atent Attorney Act.

Issued on MM, DD, YYYY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gnature)

Republic of Korea

변리사 등록신청서
([] 신규 [] 재등록 [] 재발급)
([] 한글 [] 영문)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자)				
		(영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학력 및 전공	()년 ()월	주요 경력	()년 ()월 ~ ()년 ()월			
	()대학/대학원		()근무			
	()학과 졸업					

사무소 (예정)	명칭	(한글)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주소	(한글)	변리사 인감 (인감 날인)	
		(영문)		

자격 취득 근거	[] 시험 합격자(년도 제 회)	자격증 번호	제 호
	[] 변호사		
	[] 공무원 경력자		

재발급 사유 (자세히 적으십시오)	
-----------------------	--

「변리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신청, []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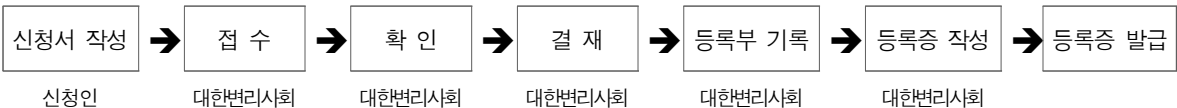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합니다) 1장	수수료 20만원 (재발급 시 없음)
------	---	---------------------------

처 리 절 차



Registration No. :

REGISTRATION OF PATENT ATTORNEY

Name :

Date of birth :

Date of original registration :

사 진
Photo
3.5×4.5cm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is registered as a patent attorne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Patent Attorney Act.

Date of Issue MM, DD, YYYY

Presiden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인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등록취소 신청서
[] 개업*·휴업·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개업은 휴업 후 업무재개를 의미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신청인)	성명 (법인명)	(한글)	등록번호	제 호
		(한자)	전화번호	
	주소			
등록사항 변경 신고	변경사항	변리사 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 및 전공·주요경력, 사무소(법인) 명칭·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 변리사 인감 등		
	변경내용			
등록취소 신청	사유			
개업(업무재개)/ 휴업/폐업 신고	구분	[]개업(업무재개) []휴업 []폐업		
	신고내용			

「변리사법」 제5조의3제2호·제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9조의2·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등록취소 신청, [] 개업(업무재개), 휴업, 폐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휴업 신고시 휴업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보자격득실확인서 등)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신청서) 작성 신고인(신청인)	→ 접수 대한변리사회	→ 확인 대한변리사회	→ 결재 대한변리사회	→ 등록부 기록 대한변리사회

사무소

[]
[]
[]

설치
이전
폐지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무소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무소 “이전” 으로 체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변리사 정보 · 사무소 설치 신고	성명	(한글)		등록번호	
		(한자)		전화번호	
	자택 주소				
	사무소 명칭	(한글)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변경	변경 전 명칭				
	변경 후 명칭				
이전 신고	이전 일자				
	이전 사무소 주소				
폐지 신고	폐지 일자				
	폐지 사유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소 []
설치, [] 이전, [] 폐지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 대한변리사회	→ 확 인 대한변리사회	→ 결 재 대한변리사회	→ 등록부 기록 대한변리사회

[] 설치
합동사무소 [] 변경 신고서
[] 해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1개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재, □ 구성원 별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기재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설치 신고	기본 정보	사무소 명칭	(한글) (영문)	○ 공동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구성원 변리사	성명		변리사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구성원 변리사	성명		변리사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구성원 변리사	성명		변리사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자택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	변경 사항	사무소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구성원 변리사 등			
		변경 일자				
변경 전						
변경 후						
해산 신고	해산 일자					
	해산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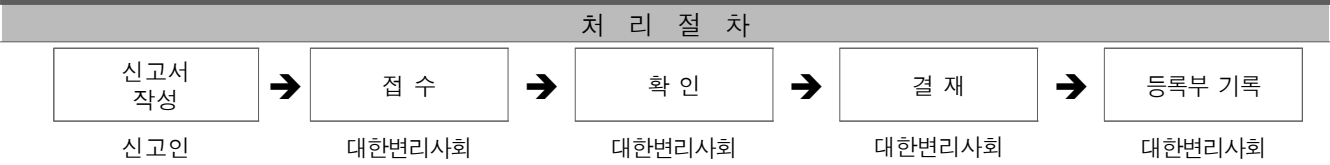
「변리사법」 제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합동사무소 [] 설치, [] 변경, [] 해산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합동사무소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합동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 음
------	----------------------------	------------



소속변리사 신고·변경 신고서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법 인	명칭	(한글)	법인 인가번호		
		(영문)	제 호		
	주사무소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소속 변리사 신고· 변경신고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신고구분	
		제 호		☐ 입사	☐ 퇴사
		제 호		☐ 입사	☐ 퇴사
		제 호		☐ 입사	☐ 퇴사
		제 호		☐ 입사	☐ 퇴사

「변리사법」 제6조의4제2항·제6조의1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소속변리사 신고·변경 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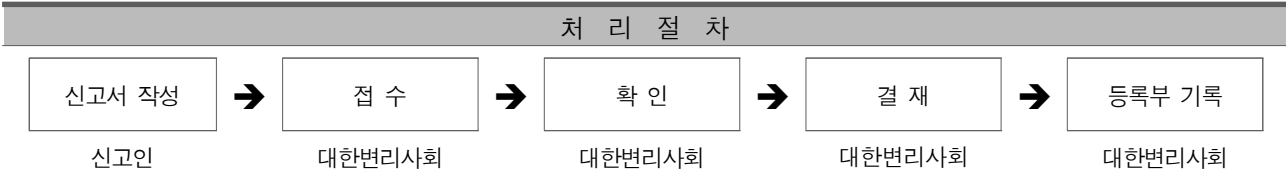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법인

대표변리사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	----	------------



해산 신고서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법 인	명칭	(한글)	법인 인가번호	
		(영문)	제 호	
	주사무소 소재지	(한글)	전화번호	
		(영문)	팩스번호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변리사 등록번호 제 호		
해산 연월일				
해산사유				

「변리사법」 제6조의9제2항·제6조의2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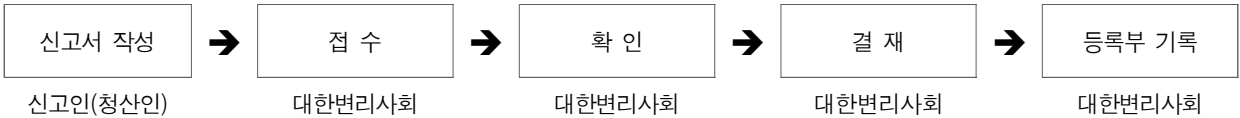
청산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481-5183